

#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은주 의원 (대표)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8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이은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영실, 우형찬, 이승미,  
정진철, 홍성룡, 송아량,  
송도호, 오중석, 김상훈,  
김태호, 추승우 (11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최근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에서 영유아 사망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음
-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안전시설 설치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-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 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보호 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운영자의 책무,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기준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대상 차량의 범위를 한정함(안 제3조)
- 나.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인증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시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『도로교통법』 및 『영유아보육법』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집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 통학버스”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은 「도로교통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인증신청)**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
2.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
3.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
4. 이행서약서(별지 제2호서식)
5. 그 밖에 제5조의 인증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5조(인증기준)**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
2.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「보험업법」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
3.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영유아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

4.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
  5.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6.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
- ②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이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- 제6조(인증절차 및 승인)**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자치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차량 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, 인증서를 교부한다.
- ③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유효기간)**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 차량변경 등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② 인증기간이 만료 된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.

**제8조(사후관리)** 시장은 인증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인증취소)**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2.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법령, 규정 및 조례에 따른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0조(지원혜택)**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영유아에 대한 차량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
2. 영유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
3. 영유아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
4.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

5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이 행 각 서

시 설 명 :  
소 재 지 :

시설주명 :  
자동차 등록번호 :

상기 본인은 「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성실히 이행하고 『도로교통법』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각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,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한다.

20 년 월 일

각서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#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인증절차 및 승인), 제10조(지원혜택)에 따라 비용 발생
  - 제6조: 인증스티커 제작비, 띠지 제작비
  - 제10조: 안전보호장치 설치비, 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, 인증표지판설치비

- ※ ① 단, 같은 조례안 제6조(인증절차 및 승인)에서 인증서 인쇄비는 소량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
- ② 안 제10조제3호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 비용의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에 의거 201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(첨부자료)
  -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
  -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696,714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96,714천원으로 연평균 139,343천원임
-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동안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

- ※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(6,012개소)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총 1,538대임(자료: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)
-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신청 건수는 추계기간(2020~2024년) 동안 균등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
- 안 제6조제2항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스티커는 서울형 택시의 ‘설명스티

키' 제작비 개당 3,000원을 활용하여 산출함

- 안 제6조제2항 어린이집 통학버스 부착용 띠지는 서울형 택시의 옆면에 부착하는 '해치서울' 제작비 개당 2만원을 활용하여 산출함
- 안 제10조제1항제1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장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시스템(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) 3가지 방식(①벨방식, ②NFC(무선통신장치), ③비콘(근거리 무선통신기기), 첨부자료 참고) 중 벨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
- ※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벨방식은 차량 1대당 설치비 30만원, 유지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안 제10조제1항제2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'후방카메라'로 한정하고, 시중가 개당 5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안 제10조제1항제4호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은 '서울형어린이집' 인증의 현판 제작비용 8만원을 활용하여 산출함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696,714천원(연평균 139,343천원)

산출방식  $\sum_{i=1}^5$  (인증스티커제작비+띠지제작비+안전보호장치설치비+교통사고방지물품구입비+인증표지판설치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(단위 : 천원)

| 연도<br>구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0년) | 2차년도<br>(2021년) | 3차년도<br>(2022년) | 4차년도<br>(2023년) | 5차년도<br>(2024년) | 합 계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세입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 | 소계(a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|
| 세출         | 제6조 제2항<br>인증스티커 제작비             | 921             | 921             | 921             | 921             | 930             | 4,614   |
|            | 제6조 제2항<br>띠지 제작비                | 6,140           | 6,140           | 6,140           | 6,140           | 6,200           | 30,760  |
|            | 제10조 제1항 제1호<br>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     | 92,100          | 92,100          | 92,100          | 92,100          | 93,000          | 461,400 |
|            | 제10조 제1항 제2호<br>교통사고 방지물품<br>구입비 | 15,350          | 15,350          | 15,350          | 15,350          | 15,500          | 76,900  |
|            | 제10조 제1항 제4호<br>인증표지판설치비         | 24,560          | 24,560          | 24,560          | 24,560          | 24,800          | 123,040 |
|            | 소계(b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40,430         | 696,714 |
| □총 비용(b-a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39,071         | 140,430         | 696,714 |

○ 인증스티커 제작비 ≙ 4,614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 (인증스티커 제작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20년 구입비 = 307대 × 3천원 = 921천원
- 2021년 구입비 = 307대 × 3천원 = 921천원
- 2022년 구입비 = 307대 × 3천원 = 921천원
- 2023년 구입비 = 307대 × 3천원 = 921천원
- 2024년 구입비 = 310대 × 3천원 = 930천원

○ 띠지 제작비 ≍ 30,76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띠지제작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20년 구입비 = 307대 × 20천원 = 6,140천원
- 2021년 구입비 = 307대 × 20천원 = 6,140천원
- 2022년 구입비 = 307대 × 20천원 = 6,140천원
- 2023년 구입비 = 307대 × 20천원 = 6,140천원
- 2024년 구입비 = 310대 × 20천원 = 6,200천원

○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≍ 461,4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안전보호장치 설치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20년 구입비 = 307대 × 300천원 = 92,100천원
- 2021년 구입비 = 307대 × 300천원 = 92,100천원
- 2022년 구입비 = 307대 × 300천원 = 92,100천원
- 2023년 구입비 = 307대 × 300천원 = 92,100천원
- 2024년 구입비 = 310대 × 300천원 = 93,000천원

○ 교통사고 방지물품(후방카메라) 구입비 ≍ 76,9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20년 구입비 = 307대 × 50천원 = 15,350천원
- 2021년 구입비 = 307대 × 50천원 = 15,350천원
- 2022년 구입비 = 307대 × 50천원 = 15,350천원
- 2023년 구입비 = 307대 × 50천원 = 15,350천원
- 2024년 구입비 = 307대 × 50천원 = 15,500천원

○ 인증표지판 설치비 ≍ 123,04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인증표지판 설치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20년 구입비 = 307개소 × 80천원 = 24,560천원
- 2021년 구입비 = 307개소 × 80천원 = 24,560천원
- 2022년 구입비 = 307개소 × 80천원 = 24,560천원
- 2023년 구입비 = 307개소 × 80천원 = 24,560천원
- 2024년 구입비 = 310개소 × 80천원 = 24,800천원

<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>

(단위 : 개소, 대)

| 구분   | 계     | 국공립   | 사회복지법인 | 법인·단체 등 | 직장·협동 | 민간    | 가정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어린이집 | 6,012 | 1,495 | 27     | 107     | 290   | 1,732 | 2,361 |
| 통학차량 | 1,538 | 48    | 4      | 43      | 15    | 1,230 | 198   |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('19.1월 기준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  
 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  
 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